

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3230호
- 나. 발의자 : 김경 의원 외 12명
- 다. 제출일자 : 2025년 10월 20일
- 라. 회부일자 : 2025년 10월 23일

2. 제안이유

- 2024년 5월 20일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가 시행됨에 따라 ‘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’의 무료이용 대상에 임산부 본인을 추가하여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무료이용 대상에 임산부 본인을 추가하여 신설(안 제45조제1항).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저출산·고령화사회기본법,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강옥심)

(1) 개정안의 개요

- 동 개정안은 서울갤러리의 무료이용 대상에 임산부 본인을 추가 하려는 것으로,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배려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음.

< 신·구조문대비표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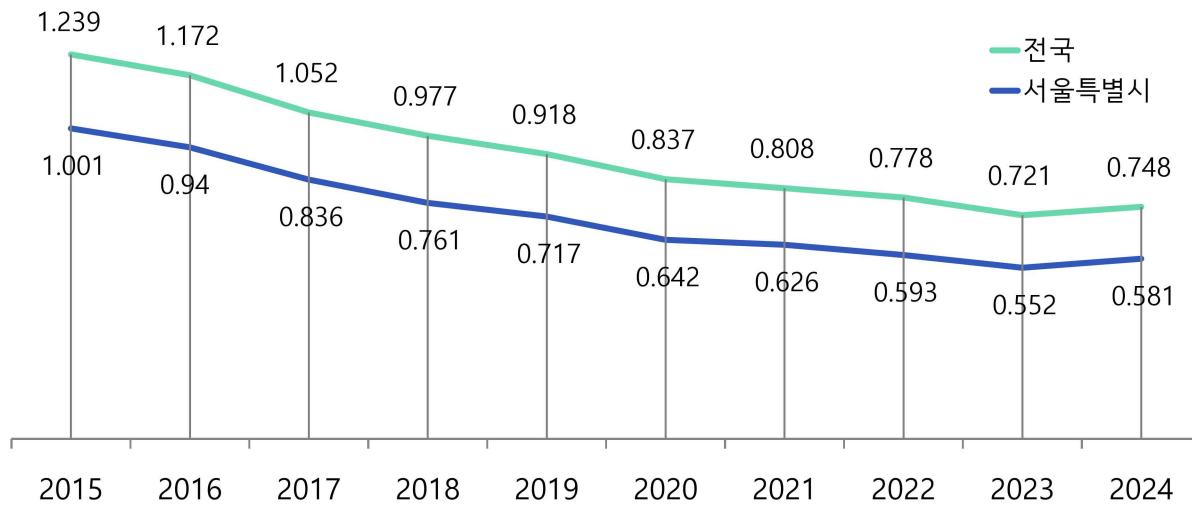
현 행	개 정 안
제5조(무료이용)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~ 7. (생 략) <u><신 설></u> 8. ~ 22. (생 략) ② (생 략)	제5조(무료이용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7. (현행과 같음) 8.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임산부 본인 9. ~ 23. (현행 제8호부터 제22호까지와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
(2) 개정안의 타당성

-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(0.72)¹⁾이 가장 낮은 국가로, 오늘날 저출산은 국가적 차원의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.
- 특히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시·도 최하위인 0.58(2024년 기준)에 불과하여 문제 해결이 더욱 시급한 상황임.

1) Fertility rates(2023), OECD

< 최근 10년간 전국 및 서울시 합계출산율 추이²⁾ >



- 이와 같은 극단적인 저출산 현상은 노동력 부족, 보건의료 및 사회 보험 제도에 대한 재정 부담 증가 등의 문제를 심화시키며³⁾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활 수준 보전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.
- 따라서 서울시는 출산 장려 및 임산부 정책 추진을 위해 가용한 정책 역량과 자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결집할 필요가 있는바, 서울 시의회는 2024년 4월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을 의결하는 등 정책적·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.
- 2024년 5월 제정된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1항은 서울시가 설치 및 관리하는 문화·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게 입장료 등을 감면⁴⁾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.

2) 시도/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, 통계청

3) Korea's Ugnorn Future(2025), OECD

4) 「지방자치법」 제156조제1항에 따라, 국가사무·기관위임사무 및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성이 있는 수수료 외에는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음.

- 다만, 해당 조문만으로는 조례의 구체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화·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개별 조례를 개정하여 감면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음.
- 이에, 서울시의회는 현재까지 3건의 조례 개정을 통해 각종 시립 시설의 입장료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마련하고 있음.

< 임산부 대상 감면 조례 개정 현황 >

연번	시설유형	개정 조례	공포일자
1	시립미술관	「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제9조(무료관람)	2024.9.30.
2	시립박물관	「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제5조(관람료의 면제)	2024.9.30.
3	시립체육시설	「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9조(입장료) 제10조(사용료 감면)	2024.9.30.

- 이에 동 개정안은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는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, 현행 법령 체계 및 관련 조례와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특별한 법적 쟁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서울갤러리는 원칙적으로 이용이 무료이고, ‘시민청’ 명칭으로 운영되었던 과거 12년간(2013년~2024년) 이용료를 부과한 적이 없어 효과성을 예상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.

전문위원	임창균(2180-8113)	입법조사관	홍민지(2180-8118)
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

의안번호
3230

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	제 안 자	안건 소관 상임위	규제철폐 안건		
	김경 의원(대표 발의)	문화체육관광위원회	해당없음		
주요내용		<p>〈개정 필요성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2024. 5.20.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시행에 따라 ‘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’의 무료이용 대상에 임산부 본인을 추가하여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고취 <p>〈주요 입법 요지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<u>무료이용 대상에 임산부 추가하여 신설</u>(안 제5조 제1항 제8호)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기존 제8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23호까지로 조정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8.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임산부 본인			
추진경과	○ '25. 10. 20. 「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의원 발의				
부 서 검토의견	원안가결(○) / 수정가결 () / 부결() / 보류()				
쟁점사항 (의회동향, 문제점 등)	<p>○ 법적·정책적 쟁점사항 없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시행 취지에 부합- 서울특별시립박물관, 서울특별시립미술관 등 타 시설 관련 조례에서도 동일 내용 반영				
대응방안	○ 제333회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시, 원안 수용 입장 표명				
상 임 위 처理결과					
담당부서	홍보담당관	팀장	유지은(☎2133-6415)		
			담당 서성열(☎2133-6419)		